

2019/03/05

##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학술연구비 규정 (안)

### 1. 학술연구비 규정

제 1조 (명칭)	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학술연구비라고 칭한다.
제 2조 (목적)	본 규정은 심뇌혈관질환예방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자격)	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정회원으로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.
제 4조 (재원)	학술연구비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기금으로 운영하며 연구비 규모 및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이사회는 필요시 정책연구를 공모 또는 의뢰할 수 있다.
제 5조 (신청)	연구책임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신청서 1부 (소정 양식)</li><li>2. 이력서 1부 (명함판 사진 부착)</li><li>3. 연구 업적 목록 1부 (최근 3년간 연구 업적만 기록)</li><li>4. 연구 계획서 1부 (연구비 관리규정 참조)</li></ol>
제 6조 (심사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) 연구 이사는 연구 과제의 심사를 위해 적당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/li><li>2) 연구 과제의 심사는 해당분야의 평가위원의 심사</li></ol>

	로 이루어지며,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공개로 실시하며 심사내용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7조 (지급)	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관리한다.
제 8조 (의무)	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, 연구기간이 종료하고 1년 이내에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학술연구비 보조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고 별책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9조 (부칙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 규정은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. 연구비 관리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다.</li> <li>3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</li> </ol> <p>-제정: 2019년 3월 (2019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승인)</p>

## 2. 연구비관리규정 (안)

제 1조 (목적)	본 규정은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비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위원회)	<p>1. 연구비의 배정과 운용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한다.</p> <p>2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3.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</p> <p>① 연구비 지원 계획</p> <p>②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</p> <p>③ 연구비의 배정</p> <p>④ 연구 결과의 평가</p> <p>⑤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의무 미 이행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분</p> <p>⑥ 기타 연구비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</p>
제 3조 (연구비 지원의 기본 원칙)	<p>1. 연구비의 지원은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2.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은 공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는 학술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(정책과제 등)에는 지원대상 및 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3. 연구비 지원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 조건에 따라 연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다기관 공동 연구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.</p>

<p>제 4조 (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절차 및 기준)</p>	<p>1.연구비 지원과제는 각 연구계획서마다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이사회에서의 승인을 받는다.</p> <p>2.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비의 감액 조정 등 연구계획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.</p> <p>3.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</li> <li>② 연구진의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업적</li> <li>③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</li> <li>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</li> <li>⑤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</li> <li>⑥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</li> </ul>
<p>제 5조 (연구의 구분)</p>	<p>연구비 지원 과제는 연구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다기관 공동연구와 단독연구로 구분한다.</p>
<p>제 6조 (연구비 신청 자격)</p>	<p>1.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정회원 이여야 한다.</p> <p>2.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.</p> <p>3.동일인이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연구 책임자로 2과제 이상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없다. 다만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원은 해당 되지 않는다.</p> <p>4.연구비 수혜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</p>

	<p>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야 다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5.연구비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한 연구기관에서 1년에 2과제 까지만 연구비를 수령할 수 있다.</p>
<p>제 7조 (연구비의 세부 항목 및 기준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단독 및 공동연구의 연구비는 연구 활동비, 보조연구원 수당, 수수료, 도서인쇄비, 재료비, 소모품비, 회의비, 여비, 공공요금, 잡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한다.</li> <li>2.연구비 중 연구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수당의 합계는 단독연구비는 30%, 다기관 공동연구는 연구비 총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단 연구 수행 과제의 성격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에는 연구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수당의 비중을 조정 할 수 있다.</li> <li>3.연구비는 중간보고 전까지 전체 연구비의 70%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중간보고서 평가 후 나머지 30%를 지급한다.</li> <li>4.보조연구원 수당, 회의비, 여비 및 소액의 세부항목 예산의 지출 증빙서류는 연구 책임자의 지불확인서로써 영수증에 대신할 수 있다.</li> </ol>
<p>제 8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2.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3.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고,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4.연구책임자는 연구 결과를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</li> </ol>

	<p>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,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술지에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하며 별책 1부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 9조 (연구비의 집행 관리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구비의 집행,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각 기관의 위탁계약에 따른다.</li> <li>2. 연구비 관리 중 발생한 제이자 및 환차액은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.</li> <li>3.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연구자가 학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</li> </ol>
<p>제 10조 (연구 기간의 연장)</p>	<p>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 종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<p>제 11조 (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)</p>	<p>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(실비정산후)를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2년간 연구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</li> <li>2.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</li> <li>3. 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</li> <li>4.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</li> <li>5.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</li> <li>6.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</li> <li>7. 연구 지원 신청서, 중간보고서, 최종보고서 등의 기</li> </ol>

	<p>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한 보고서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8.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게제 후 별책을 학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 종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부칙	<p>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2)본 규정은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-제정 2019년---</p> <p>(2019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사업안승인)</p>